

현안분석 2007-

법령용어 연구 07-05

문화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송 영 선

문화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Study on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Culture Code

- Focused on the Copyright Act -

연구자 : 송영선(전문연구원)
Song, Young-Sun

2007. 11. 30.

국 문 요약

지금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법제분야에서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많은 종류의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화분야, 특히 저작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법의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이 보고서는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소개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여러 연구보고서의 결과이며 법제처의 정비기준이다.

다음으로,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저작권법의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일조할 것을 기대해본다.

※ 키워드 : 법령용어, 저작권법, 저작권

Abstract

Until n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KLRI) has published many kinds of reports about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many different fields of Korea legislation.

This report focuses on the domain of culture, especially of the copyright. This report is study on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of the Copyright Act.

First of all, this report introduces several standards related to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They are based on the result of many reports of the KLRI and the standard of improvement of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n, this report proposes opinions about the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We expect that this report will be support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of Korea Copyright Act.

※ Key words : Terminology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Copyright Act, Copyright

목 차

국 문 요 약	3
Abstract	5
제 1 장 머리말	9
제 1 절 연구목적	9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0
제 3 절 법령용어의 정비경과	15
제 2 장 저작권법 개관	17
제 1 절 저작권법의 연혁	17
제 2 절 저작권법의 개관	27
1. 저작권법의 목적	27
2. 주요 개념	28
3. 저작권의 발생 및 법적 성질	33
4. 저작재산권의 제한 및 보호기간	33
5. 저작권의 등록	34
6. 침해의 구제	35
제 3 절 저작권법의 최근동향	36
1. 저작권법관련 입법의견	36
2. 한미 FTA 저작권관련 조항	38
제 3 장 법령순화방안	41

제 1 절 기본원칙	41
1. 알기 쉬운 법령	41
2. 분명한 법령	42
3. 어문규범에 충실한 법령	42
4. 자연스럽고 친근한 법령	42
제 2 절 법률용어의 순화	43
1. 한자어 순화기준	43
2. 용어의 순화	45
제 3 절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46
1. 문장구조	46
2. 자연스러운 문장	48
3. 어문규범의 준수	55
제 4 장 맺는말	57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59
참 고 문 헌	139

제 1 장 머리말

제 1 절 연구목적

28년 전인 1979년 영국에서는 신기한 운동이 하나 일어났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쉬운 영어 운동(Plain English Campaign)’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운동인데, 이 운동을 시작한 ‘크리시 마허’라는 여성이 이런 주장을 했다. “우리는 공적 정보를 민중이 듣거나 읽어서 즉시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적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는 정부, 기업 등의 공적 의사표시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 없이 민주주의는 설 수 없다.” 이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는 소통에 의존한다. 어려운 글은 소통에 걸림돌을 만든다. 정부처럼 큰 기관이 일반인과 소통을 할 때 오해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많은 경우에 뽑내는 단어, 복잡한 문장, 끝없이 긴 글은 간결성과 투명성을 소멸시켜 그런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영국에서는 지금도 쉬운 영어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에 대한 이해 없이 민주주의는 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정부의 공문서나 기업의 공적 의사 표시를 쉬운 말로 하라는 운동이 체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¹⁾

이와 같은 운동은 비단 영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올바른 국어 문화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법률 문화에 있어서도 이는 예외가 될 수 없다.

법령이라는 것은 원래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사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성질

1) 남영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언어 귀족주의”, 다산연구소 다산포럼, 2007. 3. 15.; http://www.edasan.org/bbs/board.php?bo_table=board3&wr_id=1373&page=4

을 가지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표현은 어느 정도 일반적·추상적 용어나 포괄적인 가치개념을 포함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간결하고 명료하며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법령용어정비사업을 통하여 법령용어정비를 위한 원칙을 세우고 각 분야별로 세부 법령의 법령용어를 정비하고 순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온 바, 이는 일반국민의 눈높이로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하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국민이 중심이 되는 법률문화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기존의 연구성과로부터 추출된 법령용어순화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법제처, 2007)을 토대로 현행 문화관련 법령에 대한 순화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 우선 문화관광부가 소관하는 법령은 크게 다음의 분야로 나뉠 수 있다.

분 야	법 령 명
일 반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문화행정 혁신추진에 관한 규정 예술원사무국직제

분 야	법 령 명
일 반	예술원사무국직제시행규칙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문화예술	공연법 공연법시행규칙 공연법시행령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운영규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관련 서식 고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한국어교원자격증신청고시 향교재산법 향교재산법시행령
문화시설	국립국악원대관규칙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국립박물관 소장유물대여규칙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국립중앙박물관건립위원회규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 1 장 머리말

분 야	법 령 명
문화시설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문화산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영상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영화진흥법시행령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명 변경>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명 변경>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명 변경>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3단 비교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3단 비교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작권법

분 야	법 령 명
문화산업	저작권법시행규칙 저작권법시행령
문화미디어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법명 변경>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출판및인쇄진흥법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관 광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법명 변경> 관광진흥법 시행령<법명 변경>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한국방문의해추진위원회규정
체 육	경륜·경정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법명 변경> 경륜·경정법 시행령<법명 변경>

제 1 장 머리말

분 야	법 령 명
체 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법명 변경> 국민체육진흥법<법명 변경>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올림픽기장령 월드컵기장령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규칙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명 변경>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문화재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문화예술관련, 문화시설관련, 문화산업관련, 문화미디어관련 등 다수의 문화관련법령 중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령순화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법령용어순화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정비 TF팀에서 지난 2001년 이래로 발간해 온 다수의 연구보고서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2006) 등에서 제시된 순화안을 참고로 검토가 필요한 법령용

어를 선별하여 순화의견을 제시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령용어의 입법례는 「법제처 종합법령정보」(<http://www.klaw.go.kr/>)에서 검색한다.

제 3 절 법령용어의 정비경과

지난 2006년에 이루어진 법령용어의 정비 및 법령문장의 순화를 위한 법령개정은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처소관의 63개 법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중 문화관광분야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통사찰보존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향교재산법의 8건의 정비가 있었다.

정부의 2007년도 입법계획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그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제 2 장 저작권법 개관

제 1 절 저작권법의 연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잦은 법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보호강화 및 인터넷 기술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를 이유로 전면 개정이 되었다.

또한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한미 FTA 등의 영향으로 다시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걸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불필요하거나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개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법 [제정 1957.1.28 법률 제432호]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①이 법의 적용을 받은 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의 범위등을 정함.
- ②저작권은 등록함으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의 존속기간 및 행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③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는 민법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
- ④선의이며 과실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받음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있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함.

2. 저작권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3916호]

문화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의 내용과 그 이용관계가 복잡 다양하여 졌으

나, 현행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제정·공포된 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법의 해석 및 적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 및 저작물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미흡한 사항이 많아, 저작권관계 국제조약의 가입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신장하면서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①저작권에 관련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저작물의 예시를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②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규정을 보완하여 외국인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 외국저작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함.
- ③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단체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단체등이 되도록 함.
- ④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작성권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보호기간은 외국의 입법예에 맞추어 사망후 50년까지로 함.
- ⑤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저작재산권자의 보호와 그의 공공적인 이용측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⑥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불가피하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당한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한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⑦저작인접권을 신설하여 실연자에게는 녹음·녹화 및 방송권을, 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배포권을, 방송사업자에게는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을 20년간 인정함.
- ⑧영상저작물에 대하여는 종합예술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그 이용의 원형을 기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복제·배포·공개상영권등까지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보며, 영상저

작물제작에 참여한 자의 저작물 이용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⑨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신설하되, 당해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⑩저작권심의회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기능과 각종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심의등을 담당하도록 함.

⑪저작권자 그밖의 권리자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⑫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출판물은 5천부, 음반은 1만매로 추정하도록 함.

3. 저작권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4183호]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중앙행정조직중 우선 시급한 일부기구를 개편하고, 현행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한시적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온 규정을 삭제함.

③원·부·처·청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 보조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④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부·처의 소속청에 대한 감독범위를 예산·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던 것을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조정함.

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간의 관련사무의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환경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청을 환경처(국무위원)로 개편함.

⑦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정부홍보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국무위원)로 분리·개편함.

⑧문화공보부를 분리·개편함에 따라 문화공보부의 관장사무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할하고, 문교부의 예술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문화부로, 체육

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 각각 이관하도록 함.
⑨건설부의 주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이내를 두도록 함.

4. 저작권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4268호]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려는 것임.

- ①국내의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함.
- ②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2급)을 통계청(1급)으로 개편함.
- ③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함.
- ④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
- ⑤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함.
- ⑥체육부가 청소년건강육성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건강육성기능을 추가함.
- ⑦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함.

5. 저작권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4352호]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6. 저작권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4541호]

현정부조직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정부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부의 수준

으로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함.

②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함.

7. 저작권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4717호]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음반의 대여권제도의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연장 및 저작권침해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행정규제의 완화차원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중 일부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①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로 보호함.

②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저작물에 게재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되, 경과조치로 5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③음반의 배포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도 판매용음반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를 가지도록 함.

④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

⑤저작권위탁관리업중 대리·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경우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함.

⑥저작권 및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물건을 그 정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당해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도록 함.

⑦벌칙중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8. 저작권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4746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음

9. 저작권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5015호]

1995.1.1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WTO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분야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정가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작권등의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외국인의 저작물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당해 조약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것을 보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약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것에 대하여서도 보호하도록 함.

②단체명의저작권 및 영상저작권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후 50년간 존속하되 창작후 1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후 공표유예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여 국제적인 보호수준으로 조정함.

③베른협정가입에 대비하여 저작물을 번역함에 있어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안될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번역할 수 있도록 하던 번역권에 대한 강제허락제도를 폐지함.

④종전에는 실연자에게 자신의 실연을 녹음·녹화, 촬영할 권리만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에 추가하여 녹음·녹화, 촬영된 자신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인정함.

⑤외국인의 저작물등의 소급보호에 따른 과급효과를 완화하고 내국인 저작물등의 보호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등의 보호기간을 조정함.

⑥외국인의 저작권보호의 확대에 따라 이제까지 외국인의 저작물등을 적법하게 이용하여온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전의 적법한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면책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도록 함.

10. 저작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5453호]

저작권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5453호] 은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음

11.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6134호]

멀티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기기의 보급확대로 인하여 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저작권의 불법침해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①컴퓨터통신등이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컴퓨터통신등에 의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함으로써 컴퓨터통신등에 의한 전송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법 제2조제9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②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가 빈번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후 복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③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등의 저작물을 컴퓨터등으로 복제하여 당해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제2항 신설).

④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저작자등이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 등록된 저작권등을 고의없이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법 제51조제1항 및 제93조제4항).

⑤저작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법 제97조의5).

12.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3.5.27 법률 6881호]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창작성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함(법 제2조제12호의5 및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 신설).

②도서관등이 도서등을 도서관간에 열람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등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도록 함(법 제28조).

③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④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등을 한 때부터 5년으로 함(법 제73조의6 신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이들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등을 정함(법 제77조 신설).

⑥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92조제2항 및 제98조제5호 신설).

⑦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을 이를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92조제3항 및 제98조제6호신설).

⑧종전에는 손해액에 관하여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판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13.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4.10.16 법률 7233호]

실연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14.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호]

저작권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호]은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도서관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음.

15. 저작권법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저작권 인증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33호 및 제56조)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②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법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 등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함.

③학교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전송(법 제25조제4항 및 제10항)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④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법 제27조)

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해당 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함.

⑤체약국 국민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보호(법 제64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음반제작자가 체약국의 국민인 음반을 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⑥실연자(실연자)의 성명표시권 등(법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80조 및 제83조)

(a)실연자에게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새로 부여하여 일신에 전속시키고, 그 밖에 실연 복제물의 배포권, 배타권 대여권,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으로 정함.

(b)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대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새로 부여함.

⑦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법 제86조)

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과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분리하고,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할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⑧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법 제104조제1항)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⑨저작권위탁관리업의 수수료 등(법 제105조제6항 및 제8항)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할 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재산권자의 권익보호나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⑩서류열람의 청구(법 제10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⑪저작권위원회(법 제112조 및 제113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⑫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법 제114조)

저작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

⑬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등(법 제133조 및 제142조)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할 수 있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동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⑭건강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법 제134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⑮친고죄의 예외(법 제140조)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제 2 절 저작권법의 개관

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2) 이하의 저작권법 개관의 내용은 문화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길라잡이’ 참조.

2. 주요 개념

(1)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

(2) 저작자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을 저작자로 의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

(3)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이다.

1) 저작인격권

① 공표권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② 성명표시권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성명이나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③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2) 저작재산권

①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가 포함됨

②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연·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이 포함됨

③ 공중송신권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함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

④ 전시권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⑤ 배포권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⑥ 대여권

최초판매원칙에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5)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1) 저작인접권자

①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

② 음반제작자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③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2)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① 실연자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생실연)공연권, (생실연)방송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②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 음성송신보상청구권

③ 방송사업자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된다. 또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때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자의 허락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

3) 저작인접권자의 보호기간

① 실 연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

② 음 반

그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50년

③ 방 송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6)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 문화관광부장관의 이용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제도로 저작권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3. 저작권의 발생 및 법적 성질

(1)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무방식주의).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차이가 있다.

(2) 저작권의 법적 성질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며, 준물권성이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리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일신전속성).

4. 저작재산권의 제한 및 보호기간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직·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출처 표시가 의무화 된 경우가 있음).

- ① 재판절차, 입법, 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3조)
- ②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 등의 이용(제24조)

- ③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④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⑧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⑨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제31조)
- 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 ⑪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제33조)
- ⑫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⑬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⑭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이다. 공표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는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 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된다.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5.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

(1) 추정력

등록된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로 추정하고, 과실 추정(입증책임의 전환) :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를 당했을 때 과실에 의하여 침해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대항력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중 양도 혹은 출판권 설정이 발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된다.

6. 침해의 구제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민사 및 형사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1) 민사구제

민사구제는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치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2) 형사구제

형사구제는 저작권자가 고의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수사당국에 소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죄는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

죄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는 수사당국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되는 등 최근 들어 비친고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 3 절 저작권법의 최근동향

1. 저작권법관련 입법의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면적인 법률의 개정이 있었던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 이후에도 주요내용의 개정을 제안하는 법률개정안이 세 차례 발의되었다.

1. 김기춘의원 대표발의안(2007. 3. 26)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는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프로기사의 기보는 가치 있는 저작물로서 많은 대중이 연구하고 감상하는 저작물임.

현재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의 바둑 프로그램,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기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보 이용에 관한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아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인터넷 사업자는 기보가 대국자의 우발적 착수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근거로 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면서 기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저작물의 예시 조항에 바둑 기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바둑 기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프로기사 등의 바둑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

2. 정종복의원 대표발의안(2007. 4. 10)

제안이유

현재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정보통신망(P2P, 웹하드 등)에 무단으로 게재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자가 많으나 저작권리 침해자에 대한 신상파악이 어려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불가능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웹하드, P2P 업체 등(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미만)의 게시판이용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03조의2제1항 신설).

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저작물등을 불법적으로 복제·전송하는 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03조의2제2항 신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공개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 당사자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권리없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요구권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신청의 남발을 방지함(안제103조의2제3항·제4항 신설).

3.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2007. 9. 4)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류번영의 토대가 되는 지적재산의 전달·공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적재산의 전달 및 공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저작권 관리자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시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저작권이 침해되는 일정한 경우에 관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함(안 제140조).

2. 한미 FTA 저작권관련 조항

(1) 온라인·오프라인 저작권 침해방지

영화상영관에서 화면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바, 이는 오프라인 상에서 콘텐츠 원소스를 촬영해 온·오프라인에 확산시키는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항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서상으로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³⁾

(2) 허락 받지 않은 저작물의 유통시 인터넷사이트의 폐쇄

한미FTA 저작권 조항 중 ‘허락 받지 않은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이메일, 메신저, UCC사이트 등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가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다운로드와 파일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만 해도 사이트의 폐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설될 수 있고 이는 명백히 행정명령을 통한 사

3) 디지털타임즈, 2007. 5. 28.

이트 폐쇄를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 폐쇄권한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즉, 협정문 부속 서한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무단복제와 전송,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만 하면 폐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⁴⁾

4) 디지털타임즈, 2007. 5. 29.

제 3 장 법령순화방안

제 1 절 기본원칙

1. 알기 쉬운 법령

법령문은 직접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써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자로 표기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법령문에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한다.

법령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 지나치게 줄여 쓴 법령문은 쉬운 이해를 가로막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수준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잘 이해할 수 있게 까다롭지 않고 쉬운 법령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종래 법령문은 가능하면 하나의 문장이나 용어로 압축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은 가능하면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법령이 간결하고 함축적이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장의 간결성과 함축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입법 의도를 정확하고 충분히 나타내는 내용이 법령문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법률 용어는 새로운 입법을 할 때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고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없다면, 알기 쉽고 친숙하며 일반화된 현대적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분명한 법령

법령문은 이를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나 그 적용을 받는 국민이 법령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 등이 명확해야 하며,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써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법령문은 애당초 친숙하고 일상적인 생활 언어와의 거리감이 생기고 점차 법령의 수가 늘어가면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는 작업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법령은 국민 생활을 규제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다의적인 해석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3. 어문규범에 충실한 법령

입법 실무상의 편의나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관행화된 법문 표현”이라고 하여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충실하지 못하였는바, 원칙적으로 어문 규범에 따르면서, 법령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어문 규범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외 기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의 적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공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한다.

4. 자연스럽고 친근한 법령

법령문의 문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체와 가깝게 바꾸어, 읽는 사람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어체나 번역체로 된 법령문은 친숙하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일반 국민이 가깝게 다가가기 어렵지 않다. 또한 우리 법령문의 많은 어휘나 표현이 대체로 어색하고 딱딱하다.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가다듬어서 국민이 그 법령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법률용어의 순화

1. 한자어 순화기준

(1) 어려운 한자어

법령수요자인 일반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순화한다.

다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더라도, 법령의 적용 대상인 사람들이나 그 법령을 자주 찾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고 어렵지 않은 한자어라면 무리해서 순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제14조 (저작권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권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권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훼손’은 일반인에게 친숙한 용어인 바, ‘닿아 없어지게 하다’, ‘손상시키다’, ‘못쓰게 하다’와 같이 굳이 장황한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행>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은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정증명’으로 정비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인증’을 풀이한 것이지만 그 의미가 모호하므로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되 한자어를 함께 적어준다.

(2) 의미전달이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면 그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 그러나 한글화하더라도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법문장의 내용에 따라 한자 표기가 다른 동음이의어나 한글 표기만으로는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현행>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순화안>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3)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어휘를 한자음대로 읽은 것으로 원래 일본말은 음으로 읽는 음독(音讀)과 뜻으로 읽는 훈독(訓讀)으로 나뉘는 바,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적으면서도 뜻으로 읽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옮겨서 표기하고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p><현행>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u>사유</u>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p> <p><순화안>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u>이유</u>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p>
--

‘사유’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며, 일본식 법령용어에서 계수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용어인 ‘원인’ 또는 ‘이유’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용어의 순화

(1) 부자연스럽거나 잘못된 용어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일상생활의 언어와는 달리 어색한 것,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법령문의 용어들은 일상적인 언어 습관과 사용법에 맞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친다.

(2) 외래어 및 외국어

외래어나 외국어는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외래어나 외국어를 쓸 때는 ‘외래어 표기법’⁵⁾에 맞게 쓴다. 다만 관례적으로 오래 써서 입에 익은 외래어는 먼저 표준국어대사전 등의 표기를 따른다.

<현행>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제 3 절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1. 문장구조

(1) 문자의 호응과 어순

법령문에서도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문장의 어순도 자연스럽게 배치해야 하는데, 어순이 올바르지 않으면 의미를 파악에 있어서 의미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5)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 1. 7. 국립국어원 홈페이지(korean.go.kr)]를 참조.

<현행>

제11조 (공표권)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순화안>

제11조 (공표권)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2.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

<현행>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순화안>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 피동문의 제한

우리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주어로 하기 때문에 외국어에 비하여 피동문이 적다. 그러나 법령문에서는 주체가 사람임이 분명하면서도 피동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피동문은 주체를 드러내어 능동문으로 고쳐 쓴다.

반면에 다음의 사용례는 사물이 주어가 되는 문장이므로 피동형으로 서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현행>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순화안>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모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될 수 없다.

2. 자연스러운 문장

법령문장에서 여러 개의 명사가 조사 없이 나열되거나 어색한 명사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딱딱하게 하거나 의미전달을 어렵게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를 넣어서 낱말과 낱말의 관계를 분명하게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보조사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1) ~으로써

도구나 방법·수단을 나타내는 ‘~으로써’는 한문의 ‘以(이)’나 일본어 ‘~をもって、~をして’에 대응하여 많이 쓴 표현이다. ‘~으로써’를 ‘~여(서)’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으면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서 도구나 수단·방법 등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하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함으로써’도 쓸 수 있다.

다음의 사용례에서는 1차적으로 도모하다를 피하다로 순화시키고, 2차적으로 피함으로써의 ‘~으로써’ 표현을 ‘~하여’로 순화시킨다.

<현행>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화안>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피하여서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에, ~에 있어서

조사 ‘에’가 자연스럽지 않게 사용된 예는 일본어 조사 ‘に’를 직역한 데서 생긴 오류로 보이는데, ‘に’에 대응되는 우리말 조사 ‘~에’를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조사로 고쳐 쓴다.

1) ~에

<현행>

제 7 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순화안>

제 7 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서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2) ~에 있어(서)

<현행>

제 2 조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순화안>

제 2 조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서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조사 ‘의’의 남용

조사 ‘의’를 남용하는 것은 일본어 ‘の’의 영향이므로, 생략하거나 적절하게 바꾼다.

<현행>

제 2 조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순화안>

제 2 조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행>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권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순화안>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권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생존하다’는 ‘살아있다’로 순화하고, ‘경과하다’는 ‘지나다’로 순화한다. ‘의’는 적절하게 바꾼다.

<현행>

제35조 ②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순화안>

제35조 ② 4.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를 ‘판매를 목적으로’로 순화하여 ‘의’를 문장의 내용에 맞도록 적절하게 바꾼다.

<현행>

제105조 ③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순화안>

제105조 ③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형의 선고를 받고’에서 남용된 ‘의’는 적절하게 순화하고 ‘선고를 받고’는 ‘선고받고’로 순화한다.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동일한 취지에서 순화한다.

(4)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주어와 부사구에서 ‘~은(는) ~은(는)’ 식의 중복은 어색하므로, 의미에 변화가 없으면 ‘~은(는) ~하면’과 같이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꾼다.

<현행>

제25조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순화안>

제25조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주어가 ‘~은’의 형태로 맨 앞에 있지만 내용상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목적어 ‘이를’을 반복하여 쓸 필요가 없다.

<현행>

제40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순화안>

제40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나 괄호에서 예외를 표현할 때 쓰는 ‘~을/를 제외한다’도 비교, 대조의 의미를 포함하는 보조사 ‘은/는’을 써서 ‘~은/는 제외한다’로

고쳐 쓴다.

<p><현행> 제54조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u>경우를 제외한다</u>) 또는 처분제한</p> <p><순화안> 제54조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u>경우는 제외한다</u>) 또는 처분제한</p>
--

(5)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정확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꾼다.

‘벌하는’이 ‘외’를 바로 수식하고 있어서 자연스럽지 않다.

<p><현행>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u>행위자를 벌하는 외에</u>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u>과한다</u>.</p> <p><순화안>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u>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u>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u>부과한다</u>.</p>
--

‘목적상’을 ‘목적을 위해’로 순화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p><현행>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u>목적상</u>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u>개재할 수</u> 있다.</p>
--

<순화안>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실을 수 있다.

(6)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표현인 ‘그렇지 않다’로 바꾼다. ‘그렇지 않다’의 의미는 대부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간결성을 위해 풀어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풀어 쓰는 경우 한 법령 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를 모두 풀어 쓰도록 한다.

<현행>

제12조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화안>

제12조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때’와 ‘경우’의 표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현재형 ‘~하는 때, ~되는 때’를 사용하도록 하고, 문맥에 따라 미래형이나 과거형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래형 ‘~할 때, ~될 때’나 과거형 ‘~한 때, ~된 때’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때’는 ‘~한 때’와 ‘~하는 때’로 쓰면 자연스럽지 않고 ‘~하였을

때'와 '~할 때'로 쓰는 데에 대해서는 시제상의 논란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한 겨우'와 '~하는 경우'를 쓰기로 한다.

<현행>

제25조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순화안>

제25조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어문규범의 준수

(1) 띄어쓰기

법령문에 자주 사용되는 고유 명사와 전문용어는 「한글 맞춤법」 기준에 따라 법령문의 간결성과 함축성을 고려하여 띄어쓰기로 한다.

<현행>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화안>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외래어와 외국어

외래어나 외국어는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한다.

그러나 ‘디자인’의 경우에 이를 ‘설계’, ‘도안’, ‘의장’으로 순화하자는 법제처의 “법령용어 순화기준”과는 대조적으로 특허분야에서는 『디자인보호법』에서 ‘의장’ 대신에 ‘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령과 정책에서 용어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었다.

실제로 ‘의장’보다는 ‘디자인’이 국민에게 더 친숙한 용어이므로 “법령용어 순화기준”에서 ‘도안’이나 ‘의장’이라는 용어보다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

<현행>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순화안>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같은 모양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 4 장 맺는말

문화가 국가성장의 원동력이며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다른 어느 분야 못지않게 많은 변화와 발전이 문화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한류의 열풍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한 문화의 전파는 물론 문화산업과의 접목으로 많은 영상저작물이 해외로 수출되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문화산업의 원천이 되는 각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이들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됨으로써 문화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인 바, 『저작권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일반인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옛날 방식으로부터 탈피하게 됨에 따라서 꾸준히 그 내용이 변화하였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⁶⁾ 관련하여서는 새롭게 등장한 법령용어 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의무관계가 이를 규정한 법령문장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검토하였다.

문화관련 분야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여전히 많은 법령이 정비 대상이다. 이들 법령의 용어와 문장, 체계 등을 순화·정비하여 투명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법제처가 2007년 3월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같은 달 3월 16일에 관보에 고시한 정부입법계획에 그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저작권법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시행일 2007.6.29.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이웃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피하여서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p> <p>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p> <p>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u>공중이</u>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8. “방송”은 공중송신 중 <u>공중이</u>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p> <p>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u>공중의</u>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p> <p>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u>공중으로 하여금</u>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u>공중의</u>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u>개시되는</u>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p>	<p>5. “음반”은 음(<u>목소리·소리를</u>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p> <p>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p> <p>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u>일반인이</u>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8. “방송”은 공중송신 중 <u>일반인이</u>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p> <p>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u>일반인인</u>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p> <p>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u>일반인으로 하여금</u>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u>일반인</u>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u>시작되는</u>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p>

현 행	순 화 안
<p>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p> <p>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p> <p>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p> <p>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p> <p>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p> <p>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p> <p>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p>	<p>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p> <p>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p> <p>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같은 모양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p> <p>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p> <p>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p> <p>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p> <p>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p> <p>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p> <p>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u>분리하여</u>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p> <p>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u>건축물의 경우에는</u>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p> <p>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u>공중에게</u> 대가를 받거나 받지 <u>아니하고</u>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p> <p>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u>공중의</u> 수요를 충족시키기 <u>위하여</u>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p> <p>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u>공중에게</u>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p> <p>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p>	<p>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p> <p>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p> <p>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u>나누어</u>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p> <p>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u>건축물인 경우에는</u>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p> <p>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u>일반인에게</u> 대가를 받거나 받지 <u>않고</u>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p> <p>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u>일반인의</u> 수요를 충족시키기 <u>위해</u>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p> <p>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u>일반인에게</u>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p> <p>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p>

현 행	순 화 안
<p>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p> <p>28.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p> <p>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p> <p>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p>	<p>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p> <p>28.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해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p> <p>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p> <p>가. 저작물등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건에 관한 정보</p> <p>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p> <p>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p> <p>32. “<u>공중</u>”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33. “<u>인증</u>”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u>위하여</u>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p> <p>제 3 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u>체결한</u>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p> <p>② 대한민국 내에 <u>상시</u>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p>	<p>건에 관한 정보</p> <p>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p> <p>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p> <p>32. “<u>일반인</u>”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33. “<u>인증(認證)</u>”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u>위해</u>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p> <p>제 3 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u>맺은</u>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p> <p>② 대한민국 내에 <u>항상</u>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p>

현 행	순 화 안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u>살</u><u>시</u>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u>살</u><u>용하게</u>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저작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저작물</p> <p>제 4 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p>② <u>제1항제9호</u>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u>항</u><u>상</u>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u>결</u><u>맞게</u>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저작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저작물</p> <p>제 4 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p>② <u>제1항 제9호</u>의 규정에 따른 컴퓨</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 5 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p> <p>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u>아니한다</u>.</p> <p>제 6 조 (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p> <p>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u>아니한다</u>.</p> <p>제 7 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u>법에 의한</u> 보호를 받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u>고시</u>·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u>절차에 의한</u> 의결·결정 등 	<p>터프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 5 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p> <p>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u>않는다</u>.</p> <p>제 6 조 (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p> <p>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u>않는다</u>.</p> <p>제 7 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u>법에 따른</u> 보호를 받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u>알릴</u>·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u>절차에 따른</u> 의결·결정 등

현 행	순 화 안
<p>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p> <p>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저작자</p> <p>제 8 조 (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p> <p>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p> <p>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제 9 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p> <p>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p>	<p>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p> <p>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저작자</p> <p>제 8 조 (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p> <p>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p> <p>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제 9 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p> <p>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p>

현 행	순 화 안
<p><u>내지 제13조의</u>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u>제16조 내지 제22조의</u>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p> <p>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u>하지 아니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저작인격권</p> <p>제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u>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u></p> <p>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u>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u>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p> <p>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p> <p>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p>	<p><u>부터 제13조까지의</u>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u>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u>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p> <p>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u>하지 않는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저작인격권</p> <p>제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u>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u></p> <p>1.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p> <p>2.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p> <p>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u>저작물의 원본을 전시하는 방식으로</u>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p> <p>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p> <p>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p>

현 행	순 화 안
<p>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p> <p>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렇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 <p>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p> <p>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p>	<p>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대로 이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렇지 않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 <p>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p> <p>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u>생존하였더라면</u>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u>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u>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u>.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p> <p>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u>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u>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p> <p>제 4 절 저작재산권</p> <p>제 1 관 저작재산권의 종류</p> <p>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p> <p>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p>	<p>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u>살아있었더라면</u>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u>해서는 안된다</u>.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u>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공동저작자 모두가 합의하지 않고는 행사될 수 없다</u>.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p> <p>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u>대표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u>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p> <p>제 4 절 저작재산권</p> <p>제 1 관 저작재산권의 종류</p> <p>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p> <p>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p>

현 행	순 화 안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u>당해</u>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u>해당</u>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제21조 (대여권)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대여권)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 2 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u>위하여</u>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u>위해</u>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p> <p>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p> <p>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p>	<p>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p> <p>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p> <p>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p>

현 행	순 화 안
<p>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p> <p>⑦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p>	<p>거나 전송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알리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⑤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p> <p>⑦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에는</u>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u>못한 때</u></p> <p>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u>위배한 때</u></p> <p>3. 보상관계 업무를 <u>상당한 기간 휴지하여</u>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p> <p>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u>경과한</u>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에 <u>위하여</u> 사용할 수 있다.</p> <p>⑨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u>위하여</u>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p> <p>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p>	<p>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면</u>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u>못한 경우</u></p> <p>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u>위반한 경우</u></p> <p>3. 보상관계 업무를 <u>오랜 기간 쉬어서</u>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p> <p>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u>지난</u>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에 <u>위해</u> 사용할 수 있다.</p> <p>⑨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u>위해</u>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u>해야</u> 한다.</p> <p>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p>

현 행	순 화 안
<p>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p> <p>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u>위하여는</u>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p> <p>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u>명목으로든지</u>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u>당해</u>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p>	<p>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p> <p>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u>위해서는</u>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p> <p>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u>이유로든지</u>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u>해당</u>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 <p>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p>	<p>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인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인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로 한 복제는 그렇지 않다.</p> <p>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해당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 <p>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p>

현 행	순 화 안
<p><u>에 한하여</u> 제공하는 경우</p> <p>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u>위하여</u> 필요한 경우</p> <p>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u>사유로</u>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p> <p>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u>열람할 수</u>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u>열람할 수</u>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u>열람할 수</u>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u>발행된</u> 도서등은 그 <u>원래대로</u> 5년이 <u>경과하지</u> 아니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 <p>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p>	<p><u>로 제한하여</u> 제공하는 경우</p> <p>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u>위해</u> 필요한 경우</p> <p>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u>이유로</u>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p> <p>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u>볼 수</u>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u>볼 수</u>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u>볼 수</u>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u>펴낸</u> 도서등은 그 <u>발행일로부터</u> 5년이 <u>지나지</u> 아니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 <p>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p>

현 행	순 화 안
<p>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u>열람할 수</u>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u>고시하는 기준에 의한</u> 보상금을 <u>당해</u> 저작재산권자에게 <u>지급하여야</u>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⑥ <u>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u>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u>준용한다.</u></p> <p>⑦ <u>제1항 내지 제3항의</u>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u>위하여</u>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u>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u>위하여</u>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u>위하여</u> 상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u>볼 수</u>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u>알리는 기준에 따른</u> 보상금을 <u>해당</u> 저작재산권자에게 <u>지급해야</u>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⑥ <u>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u>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u>준하여 적용한다.</u></p> <p>⑦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u>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u>위해</u>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u>조치를 해야 한다.</u></p> <p>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u>위해</u>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u>위해</u> 상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현 행	순 화 안
<p>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p> <p>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 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p> <p>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 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p>	<p>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u>공중에</u>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아니하다.</u></p> <p>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향시 전시하기 <u>위하여</u> 복제하는 경우 4. <u>판매의 목적으로</u> 복제하는 경우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p> <p>④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p> <p>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 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p>	<p>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u>일반인에게</u>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면 그렇지 않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향시 전시하기 <u>위해</u> 복제하는 경우 4. <u>판매를 목적으로</u> 복제하는 경우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p> <p>④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p> <p>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 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p>

현 행	순 화 안
<p>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p> <p>②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p> <p>제37조 (출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p> <p>제 3 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p> <p>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p>	<p>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p> <p>②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p> <p>제37조 (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와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p> <p>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p> <p>제 3 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p> <p>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p> <p>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p> <p>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 <p>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p>	<p>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p> <p>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p> <p>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 <p>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p>

현 행	순 화 안
<p>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p> <p>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p> <p>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p> <p>① 제39조제1항 단서·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p> <p>②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p> <p>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p>	<p>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p> <p>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p> <p>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p> <p>① 제39조제1항 단서·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차레대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p> <p>② 일부분씩 차레대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지나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p> <p>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p> <p>제 4 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p> <p>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p> <p>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p> <p>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p>	<p>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생하기 시작한다.</p> <p>제 4 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p> <p>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 없는이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p> <p>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p> <p>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p>

현 행	순 화 안
<p>물건(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 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p> <p>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p> <p>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p> <p>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p> <p>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p>	<p>물건(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 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해야 한다.</p> <p>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모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p> <p>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p> <p>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p> <p>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하여 적용한다.</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제49조 (저작권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p>제49조 (저작권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속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속하는 경우
<p>제 5 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p>	<p>제 5 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p>
<p>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p>	<p>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p>

현 행	순 화 안
<p>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p> <p>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p>	<p>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p> <p>④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해 필요해서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p> <p>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u>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u>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등록 및 인증</p> <p>제53조 (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p> <p>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p><u>금을 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u>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등록 및 인증</p> <p>제53조 (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p> <p>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현 행	순 화 안
<p>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p> <p>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p> <p>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흡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p> <p>2. 등록 신청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p> <p>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p>	<p>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p> <p>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p> <p>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다만, 신청의 결합이 고쳐질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날 고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p> <p>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p> <p>2. 등록 신청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p> <p>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보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저작권등록부의 열</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u>위하여</u>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절 출판권</p> <p>제57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u>도화로</u>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p>	<p>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u>위해</u>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절 출판권</p> <p>제57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u>그림도면으로</u>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p>

현 행	순 화 안
<p>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p> <p>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p> <p>②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p> <p>③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p>	<p>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p> <p>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한다.</p> <p>②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해야 한다.</p> <p>③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시를 해야 한다.</p>
<p>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p> <p>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p> <p>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제60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p> <p>② 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p>	<p>제60조 (출판권의 남아 있는 기간 등) ①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p> <p>② 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p> <p>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①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p> <p>②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④ 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써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p>	<p>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해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나누어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p> <p>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①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p> <p>②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④ 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써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p>

현 행	순 화 안
<p>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p> <p>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p> <p>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p> <p>제63조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①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p> <p>② 제23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 내지 제33조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③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저작인접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통 칙</p> <p>제64조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p>	<p>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p> <p>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p> <p>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결맞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p> <p>제63조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①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p> <p>② 제23조·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준하여 적용한다.</p> <p>③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저작인접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통 칙</p> <p>제64조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p> <p>1. 실연</p> <p>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p> <p>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p> <p>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p> <p>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p> <p>2. 음반</p> <p>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p> <p>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p> <p>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p> <p>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p>	<p>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p> <p>1. 실연</p> <p>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p> <p>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맺은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p> <p>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p> <p>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p> <p>2. 음반</p> <p>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p> <p>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p> <p>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맺은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 내에서 처음으로 고정된 음반</p> <p>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맺은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의 국민(해당 조약체결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조약체결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p>

현 행	순 화 안
<p>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p> <p>3. 방송</p> <p>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p> <p>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p> <p>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u>체결한</u>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u>체약국</u>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u>당해 체약국</u>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p> <p>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u>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u></p> <p>제 2 절 실연자의 권리</p> <p>제66조 (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u>표시하여야</u>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아니하다.</u></p>	<p>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p> <p>3. 방송</p> <p>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p> <p>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p> <p>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u>맺은</u>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u>조약체결국</u>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u>해당 조약체결국</u>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p> <p>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u>해석되어서는 안 된다.</u></p> <p>제 2 절 실연자의 권리</p> <p>제66조 (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u>표시해야</u>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제67조 (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67조 (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p>	<p>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p>
<p>제69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p>	<p>제69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p>
<p>제70조 (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70조 (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제71조 (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p>	<p>제71조 (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p>
<p>제72조 (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72조 (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현 행	순 화 안
<p>제73조 (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74조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p> <p>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u>지급하여야</u>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u>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u>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u>준용한다.</u></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u>위하여</u>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73조 (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u>그렇지 않다.</u></p> <p>제74조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p> <p>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u>지급해야</u>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② <u>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u>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하여 <u>적용한다.</u></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u>위해</u>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p>	<p>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p> <p>② 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하여 적용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알리는 금액을 지급한다.</p>
<p>제77조 (공동실연자)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제77조 (공동실연자)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현 행	순 화 안
<p>③ 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u>준용한다.</u></p> <p>제 3 절 음반제작자의 권리</p> <p>제78조 (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p> <p>제79조 (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80조 (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p> <p>제81조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p> <p>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u>지급하여야</u>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u>준하여 적용한다.</u></p> <p>제 3 절 음반제작자의 권리</p> <p>제78조 (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p> <p>제79조 (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제80조 (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p> <p>제81조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p> <p>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u>지급해야</u>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u>그렇지 않다.</u></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② <u>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의</u>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u>준용한다.</u></p> <p>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 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u>지급하여야</u> 한다.</p> <p>② <u>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u>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u>준용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방송사업자의 권리</p> <p>제84조 (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p> <p>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 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 리를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p> <p>제86조 (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실 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부터 발생한다.</p> <p>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p>	<p>② <u>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u> 규정과 <u>제75조 제3항·제4항의</u>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u>준하여 적용한다.</u></p> <p>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 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u>지급해야</u> 한다.</p> <p>② <u>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u> 규정과 <u>제76조 제3항은</u>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u>준하여 적용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방송사업자의 권리</p> <p>제84조 (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p> <p>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 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 리를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p> <p>제86조 (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실 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부터 발생한다.</p> <p>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p>

현 행	순 화 안
<p>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p> <p>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p> <p>②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p> <p>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p> <p>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p> <p>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p> <p>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제23조·제24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2조·제33조제2항·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제46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제4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9조의 규정</p>	<p>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p> <p>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p> <p>②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50년간 존속한다.</p> <p>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p> <p>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낸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50년이 지난 때까지 음반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p> <p>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p> <p>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제23조·제24조·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제33조 제2항·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하여 적용한다.</p> <p>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제46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제4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9조의 규정</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은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u>준용한다.</u></p> <p>제89조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u>제50조 내지 제52조의</u>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u>준용한다.</u></p> <p>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u>제53조 내지 제55조의</u>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하여 <u>준용한다.</u>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p> <p>제 4 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p> <p>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u>체결한</u>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u>상응하게</u>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92조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p>	<p>은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u>준하여 적용한다.</u></p> <p>제89조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u>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u>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u>준하여 적용한다.</u></p> <p>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u>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u>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하여 <u>준하여 적용한다.</u>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p> <p>제 4 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p> <p>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u>맺은</u>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u>결맞게</u>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92조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p>

현 행	순 화 안
<p>는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p> <p>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u>위하여</u>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p> <p>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p> <p>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u>당해</u>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u>간주되지 아니한다</u>.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u>위하여</u>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u>당해</u>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u>당해</u>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p> <p>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u>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p>	<p>는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p> <p>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u>위해</u>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p> <p>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p> <p>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u>해당</u>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u>여겨지지 않는다</u>.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u>위해</u>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u>해당</u>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때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u>해당</u>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p> <p>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u>영향을 미치지 않는다</u>.</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u>아니한다</u>.</p> <p>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제23조·<u>제28조 내지 제34조·제36조 및</u> 제37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u>준용한다</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에는</u>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u>당해</u>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u>저촉되는</u>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p> <p>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u>위하여</u>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p> <p>2. 시사보도를 <u>위하여</u> 이용하는 경우</p> <p>제95조 (보호기간)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u>기산하여</u> 5년간 존속한다.</p> <p>②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u>위하여</u>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u>당해</u>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p>	<p>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u>않는다</u>.</p> <p>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제23조·<u>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제36조와</u> 제37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u>준하여 적용한다</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면</u>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u>해당</u>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u>어긋나는</u>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u>위해</u>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2. 시사보도를 <u>위해</u> 이용하는 경우</p> <p>제95조 (보호기간)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u>셈하기 시작하여</u> 5년간 존속한다.</p> <p>②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u>위해</u>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u>해당</u>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p>

현 행	순 화 안
<p>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u>기산하여</u> 5년간 존속한다.</p> <p>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20조 단서의 규정은 베이스의 거래제공에,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제46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제47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8조의 규정은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제49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u>준용한다.</u></p> <p>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u>준용한다.</u></p> <p>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u>제53조 내지 제55조의</u>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u>준용한다.</u>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p>	<p>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u>셈하기 시작하여</u> 5년간 존속한다.</p> <p>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20조 단서의 규정은 베이스의 거래제공에,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제46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제47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8조의 규정은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제49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u>준하여 적용한다.</u></p> <p>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u>준하여 적용한다.</u></p> <p>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u>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u>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u>준하여 적용한다.</u>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제 5 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p> <p>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p>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p> <p>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p>	<p>제 5 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p> <p>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p>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p> <p>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p>

현 행	순 화 안
<p>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p>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p> <p>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①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p> <p>②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p> <p>제 6 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p> <p>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p>	<p>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p>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p> <p>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①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p> <p>②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p> <p>제 6 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p> <p>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u>인하여</u>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u>당해</u>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u>인하여</u>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u>당해</u>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p> <p>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u>소명하여</u> 온라인</p>	<p>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u>인해</u>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u>해당</u>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u>인해</u>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u>해당</u>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p> <p>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u>설명하여</u> 온라인</p>

현 행	순 화 안
<p>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p> <p>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p> <p>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p>	<p>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해당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p> <p>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받는 사람”)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p> <p>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u>인하여</u>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u>인하여</u> 발생하는 손해를 <u>배상하여야</u> 한다.</p> <p>⑦ <u>제1항 내지 제4항의</u> 규정에 따른 <u>소명</u>, 중단, <u>통보</u>, 복제·전송의 재개, <u>수령인</u>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u>협의하여야</u> 한다.</p> <p>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u> 상호</u>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p>	<p>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u>인해</u>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u>인해</u> 발생하는 손해를 <u>배상해야</u> 한다.</p> <p>⑦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u> 규정에 따른 <u>설명</u>, 중단, <u>알림</u>, 복제·전송의 재개, <u>받는 사람</u>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u>협의해야</u> 한다.</p> <p>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u> 서로</u>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p>

현 행	순 화 안
<p>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저작권위탁관리업</p> <p>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p> <p>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 	<p>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알릴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저작권위탁관리업</p> <p>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p> <p>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p>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p>	<p>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p>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p>

현 행	순 화 안
<p>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p> <p>⑥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p> <p>⑦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⑧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p> <p>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p>	<p>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⑥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p> <p>⑦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p> <p>⑧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p> <p>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맺기 위해 필요한 정</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u>제공하여야</u> 한다.</p>	<p>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u>제공해야</u> 한다.</p>
<p>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u>당해</u>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u>사유가</u> 없는 한 이에 <u>응하여야</u> 한다.</p>	<p>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u>해당</u> 저작물등의 사용료 <u>결정에</u>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u>이유가</u> 없는 한 이에 <u>응해야</u> 한다.</p>
<p>제108조 (감독)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u>도모하기 위하여</u>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제108조 (감독)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u>피하기 위해</u>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u>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p>	<p>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면 6개월</u>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p>

현 행	순 화 안
<p>은 경우</p> <p>3.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u>사유</u>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u>허위로</u> 한 경우</p> <p>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u>사유</u>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에는</u>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p> <p>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p> <p>제110조 (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u>실시하여야</u> 한다.</p> <p>제111조 (과징금 처분)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u>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u>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p>	<p>은 경우</p> <p>3.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u>이유</u>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u>거짓으로</u> 한 경우</p> <p>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u>이유</u>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면</u>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p> <p>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p> <p>제110조 (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u>실시해야</u> 한다.</p> <p>제111조 (과징금 처분)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u>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u>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u>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u> 국세채납처분의 <u>예에 의하여 이를</u> 징수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u>위하여</u> 사용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u>종별</u>·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저작권위원회</p> <p>제112조 (저작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저작물등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u>위하여</u> 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u>기간에 내지 않으면</u> 국세채납처분의 <u>예에 따라</u> 징수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u>위해</u> 사용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u>종류</u>·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저작권위원회</p> <p>제112조 (저작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저작물등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u>위해</u> 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현 행	순 화 안
<p>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u>상당하는</u>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p> <p>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p> <p>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u>상당하는</u>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p> <p>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p> <p>5. 그 밖에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u>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u> 하며, 그 <u>보궐위원의</u>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 기간으로</u>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u>보궐위원을</u> 위촉하지 <u>아니할 수</u> 있다.</p>	<p>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u>해당하는</u>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p> <p>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p> <p>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u>해당하는</u>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p> <p>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p> <p>5. 그 밖에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u>결원 보충위원을 위촉해야</u> 하며, 그 <u>결원 보충위원의</u> 임기는 전임자의 <u>남은 임기로</u>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u>결원 보충위원을</u> 위촉하지 <u>않을 수</u> 있다.</p>
<p>제11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p>1. 분쟁의 조정</p> <p>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p>	<p>제11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p>1. 분쟁의 조정</p> <p>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항의 심의</p> <p>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p> <p>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p> <p>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p> <p>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p> <p>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p> <p>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p> <p>9.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p> <p>10. 법령이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업무</p> <p>11.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p> <p>제114조 (조정부) ①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5조 (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p>	<p>항의 심의</p> <p>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p> <p>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p> <p>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p> <p>6. 저작권 정책의 수립을 지원</p> <p>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을 지원</p> <p>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마련 및 운영</p> <p>9.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p> <p>10. 법령이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업무</p> <p>11.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p> <p>제114조 (조정부) ①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5조 (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p>

현 행	순 화 안
<p>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p>	<p>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p>
<p>제117조 (조정외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7조 (조정외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사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다.</p>
<p>제118조 (조정비용)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p> <p>②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p>	<p>제118조 (조정비용)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p> <p>②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p>
<p>제119조 (감정) ① 위원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p>	<p>제119조 (감정) ① 위원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회가 정한다.</p> <p>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p> <p>제121조 (위원회 조직 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조정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저작권정보센터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2조 (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 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 9 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p> <p>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p>	<p>원회가 정한다.</p> <p>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p> <p>제121조 (위원회 조직 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조정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저작권정보센터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2조 (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 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 9 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p> <p>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p>

현 행	순 화 안
<p>제76조·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u>인하여</u> 발생한 손해를 <u>배상하여야</u> 한다.</p> <p>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p>	<p>제76조·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u>인해</u> 발생한 손해를 <u>배상해야</u> 한다.</p> <p>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p> <p>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u>소지하는</u> 행위</p> <p>②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p> <p>③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u>유발 또는 은닉한다는</u>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에는</u>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아니하다.</u></p>	<p>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p> <p>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u>지니는</u> 행위</p> <p>②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p> <p>③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u>유발하거나 감춘다는</u>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면</u>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현 행	순 화 안
<p>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p> <p>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p> <p>④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p> <p>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p> <p>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p>	<p>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p> <p>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p> <p>④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p> <p>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금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금액으로 추정한다.</p> <p>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금액으로 하여 그</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p> <p>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p> <p>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p>	<p>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p> <p>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설했하여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뜻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p> <p>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p>

현 행	순 화 안
<p>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p>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보 칙</p> <p>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 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p>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p>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보 칙</p> <p>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 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제132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 <u>제50조 내지 제52조의</u>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u>준용되는</u>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p> <p>2. <u>제53조 내지 제55조의</u> 규정에 따른 등록(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u>준용되는</u>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p> <p>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p>	<p>제132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 <u>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u>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u>준하여 적용되는</u>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p> <p>2. <u>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u> 규정에 따른 등록(제63조 제3항·제90조와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u>준하여 적용되는</u>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p> <p>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p>
<p>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u>위하여</u>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u>발견한 때에는</u>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u>관계공무원으로</u></p>	<p>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거둠·폐기 및 삭제) ①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u>위해</u> 제작된 <u>기구</u>·장치 및 프로그램을 <u>발견한 경우에는</u>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u>관계 공무원에게</u></p>

현 행	순 화 안
<p><u>하여금</u>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u>관계공무원</u>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u>필요한 때에는</u>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u>인하여</u>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u>위하여</u>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⑥ <u>제1항 내지 제4항의</u>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u>도모</u></p>	<p>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u>관계 공무원</u>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u>필요한 경우에는</u>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u>인해</u>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u>과</u>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u>위해</u>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⑥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u>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u>촉하</u></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u>하기 위하여</u>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u>당해</u>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p> <p>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벌 칙</p> <p>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p>	<p><u>기 위해</u>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u>해당</u>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p> <p>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벌 칙</p> <p>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p>

현 행	순 화 안
<p>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 이하</u>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u>병과할 수</u>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 이하</u>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u>병과할 수</u>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u>준용되는</u>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u>은닉한다는</u>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p>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 원 이하</u>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u>함께 부과할 수</u>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 원 이하</u>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u>함께 부과할 수</u>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u>준하여 적용되는</u>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u>숨긴다는</u>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p>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p>제138조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 	<p>제138조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

현 행	순 화 안
<p>시하지 아니한 자</p> <p>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5.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p> <p>제139조 (물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p> <p>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p> <p>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p> <p>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p>	<p>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p> <p>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5.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p> <p>제139조 (물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p> <p>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p> <p>1.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과 제13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2. 제136조 제2항 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와 제138조 제5호의 경우</p> <p>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 제2항 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p> <p>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p>

현 행	순 화 안
<p>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u>행위자를 벌하는 외에</u>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u>과한다</u>.</p> <p>제142조 (과태료) ①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u>3천만원 이하의</u>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u>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에 <u>불복이 있는</u> 자는 그 처분의 <u>고지</u>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u>이의를 제기할 수</u> 있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u>이의를 제기한 때에는</u>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u>통보하여야</u> 하며, 그 <u>통보</u>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u>의한</u>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u>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u> 과태료를</p>	<p>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u>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u>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u>부과한다</u>.</p> <p>제142조 (과태료) ①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u>3천만 원 이하의</u>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u>않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에 <u>이의가 있는</u> 자는 그 처분의 <u>알림</u>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u>다른 의견을 낼 수</u> 있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u>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u>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u>알려야</u> 하며, 그 <u>알림</u>을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u>따른</u>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u>기간에 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u> 과태료를 납부</p>

현 행	순 화 안
<p>납부하지 <u>아니한 때에는</u> 국세채납처분의 <u>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u></p> <p>부칙<제8101호, 2006.12.28></p> <p>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u>경과한</u>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u>이 법 시행 전에</u>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u>이 법 시행 전에</u>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③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p> <p>제 3 조 (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p> <p>제 4 조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u>이 법 시행 전에</u>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하지 <u>않으면</u> 국세채납처분의 <u>예에 따라 징수한다.</u></p> <p>부칙<제8101호, 2006.12.28></p> <p>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u>지난</u>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u>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u>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u>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u>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③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p> <p>제 3 조 (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p> <p>제 4 조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u>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u>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제 5 조 (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u>이 법 시행 전에</u>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p>	<p>제 5 조 (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u>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u>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p>
<p>제 6 조 (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u>이 법 시행당시</u>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은 이 법에 따른 법정허락으로 본다.</p>	<p>제 6 조 (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u>이 법을 시행할 당시</u>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은 이 법에 따른 법정허락으로 본다.</p>
<p>제 7 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u>이 법 시행당시</u>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의 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 7 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u>이 법을 시행할 당시</u>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의 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 8 조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u>이 법 시행 전에</u>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이 법에 따른다.</p>	<p>제 8 조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u>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u>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이 법에 따른다.</p>
<p>제 9 조 (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u>이 법 시행 전에</u> 종전의 제23조제3항·제28조제5항·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u>수행한</u>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p>	<p>제 9 조 (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u>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u> 종전의 제23조제3항·제28조제5항·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u>받은</u> 보상금에 대하여도</p>

현 행	순 화 안
<p>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p>	<p>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해당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p>
<p>제10조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실연에 관하여는 이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행한 실연에 관하여는 이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1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p>	<p>제11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p>
<p>제12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제12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 (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그 심의조정위원은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p>	<p>제13조 (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그 심의조정위원은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p>
<p>제1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p>	<p>제1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p>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p><u>이 법 시행 전의</u>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저작권법 제69조”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p> <p>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u>이 법 시행당시</u>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u>이 법을 시행하기 전의</u>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저작권법 제69조”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p> <p>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u>이 법을 시행할 당시</u>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참 고 문 헌

강현철,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국립국어원,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 2005.

국회법제실, 입안방법(법률용어, 법문표현, 입법모델), 2007.

김광해, 비슷한 말 반대말 사전, 2000.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 용어정비를 위한 기초이론, 한국법제연구원, 1995.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2006.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및 문자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문가 회의자료집, 2002.